

## 2024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1차 전문계약직 채용(제한경쟁) 공고

우리 농진원은 「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산업적 진흥」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8일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
### 1.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

채용방법 : 제한경쟁채용

채용분야 및 채용규모

채용 분야	채용 직급	채용 인원	관련 학문분야	수행예정업무	근무장소
합계		4명			
1-1 사업운영 (기술평가)	전문 계약직 (나급)	1	상경계열, 이공계열	농업개발기술 확산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(개발기술 경제성평가 등)	전북 익산
2-1 사업운영 (벤처창업)		1	이공계열	생명자원정보서비스(BRIS) 사업 운영	전북 익산
3-1 사업운영 (스마트농업)		2	상경계열 이공계열	스마트농업 지원사업 운영 및 농산 업체 관리	전북 익산

### 2. 근무조건

근무(계약)기간	근무시간	휴게시간	휴일	보수(연봉)수준
계약일로부터 1년	주5일, 1일 8시간 (09:00~18:00)	12:00~13:00 (점심시간)	주휴일 : 토·일요일 관공서공휴일 등	4,425만원 ~ 5,106만원

○ 근무(계약)기간

- 전문계약직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, 성과평가에 따라 최대 7년 (1-1 분야 최대 3년)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. 단, 해당수행예정업무 사업의 운영현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
○ 보수(연봉)수준 : 관련 경력에 따라 최종 연봉액 책정(성과급 별도 : 연봉의 20%내외)

○ 근무시간은 기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※ 그 밖에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농진원 내부규정에 의함

### 3. 응시자격

□ 응시자격 :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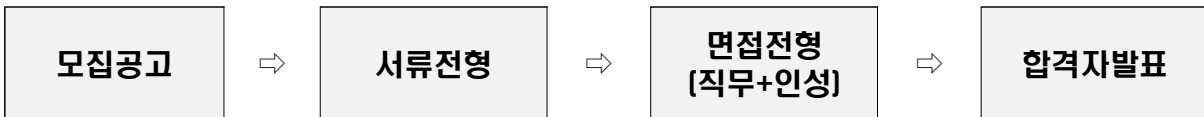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자격 : 채용분야 관련 학문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

\* 2024. 5월 중 근무 가능한 자

○ 농진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인사규정 제18조)

〈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(결격사유)〉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「병역법」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
※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(제82조)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### 4. 채용절차 및 시험방법



\*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

□ 서류전형

○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응시자격요건(형식요건) 실시

\* 접수마감일 기준, 형식요건심사 결과 적부에 따라 해당 응시자를 다음전형 대상자로 선정

\* 박사학위, 전문자격증 등 자격요건 확인

서류전형 부적격 세부기준
1. 자격요건 증빙 미제출 및 허위파일 제출 2. 이름(한자포함), 생일(출생년도 없이), 연락처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3.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항목누락 제출한 경우 4.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대해 동일문자 반복 등 의미 없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경우

※ 마감시간 접수분에 한하며, 농진원이 안내한 사항 외 양식 등 사용 시 접수처리 불가

## □ 면접전형

- 농진원 직원으로서의 자세, 예의, 품행,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과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해당 채용분야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계획 발표(15분 이내) 실시
  - \*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발표자료 제출 안내

- ※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전형 단계 응시자격이 부여(공지)되고, 전형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진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- ※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※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각 전형별 불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순번 부여

## 5.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(예비합격자 포함)

### □ 최종합격자 결정 : 채용분야별 채용(예정)인원의 1배수(총 4명)

- 최종면접 결과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(위)로 결정
  - \* 단, 동점자 발생 시, 1. 취업지원대상자, 2. 장애인, 3. 지방이전 지역인재 순으로 결정

### □ 예비합격자 결정 : 채용분야별 1명(총3명)

- 결정방법 : 면접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
- 유효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(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시 3년)
- 최종합격자가 임용결격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거나 최종합격자 스스로 임용 포기 또는 조기퇴직 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예비합격자로 충원함

### □ 최종합격자(예비 포함) 발표 : 4. 26.(금) 예정

- 농진원 홈페이지([www.koat.or.kr](http://www.koat.or.kr)), 개인SMS(휴대전화문자) 등 연락통보 예정
  - ※ 상기일정은 재공고 등 기관사정 및 채용진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공고 이후 변경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

## 6. 세부일정

구 분	일자(예정)	주 요 내 용
공고	3.28.(목) ~ 4.12.(금)	○ 농진원 홈페이지, 알리오 등 공지 *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 3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재공고
지원서 접수	4.1.(월) ~ 4.12.(금)	○ 온라인 접수 - 농진원 홈페이지(www.koat.or.kr) → 국민소통 → 채용지원에서 접수(입사지원시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) - <b>2024. 4. 12.(금) 오전 10:00 마감(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</b>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4.16.(화)	○ 홈페이지, 개인SMS(휴대전화문자) 등 연락통보 예정
면접전형	4.24.(수)	○ 농진원 직원으로서의 자세, 예의, 품행,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,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- 직무계획 발표: 형식, 분량 자유(단, 발표시간 15분 이내로 제한) - <b>발표자료 2024. 4. 23(화) 오후 13:00까지 이메일 제출 (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), 제출처 : secj1322@koat.or.kr</b> *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발표자료 제출 안내
최종합격자 발표	4.26.(금)	○ 면접전형 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

※ 추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, 공고 이후 변경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

## 7. 제출서류

입사지원 시 제출서류(1~4번 항목 필수, 5번 항목은 해당자에 한함)

원서(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) : 직원채용지침 제15조	필수 여부	
1. 입사지원서	필수	-
2. 자기소개서	필수	-
3.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	필수	-
4. 학위증(사본)	필수	-
5. 기타 자격증 (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관련된 자격 증명서류, 해당자에 한함) *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이전지역인재(학사학위 기준 졸업증명서) 등	-	해당자

\* 기타 증명서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,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함

## □ 서류제출 방법 : 온라인 제출

○ 홈페이지([www.koat.or.kr](http://www.koat.or.kr)) → 국민소통 → 채용지원에서 접수

\*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

입사지원서 상 블라인드 처리방법 안내
○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, 학교명, 학점, 주소 등 기재란 없음
○ 전자우편(E-mail) 기재 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○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(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)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
○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외국어, 지역 인재 관련 정보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

## 8. 전형단계별 가점

※ 법정가점(취업지원대상자 :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)은 최소 채용(모집)단위별 선발예정인원(최종선발예정인원을 말함)이 **4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**하며,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적용함.

※ **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**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
※ 그 밖에 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및 「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(국가보훈처 훈령)」 제41조의3(국가유공자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)에 의함.

구분	대상	서류전형	최종면접
법정가점	취업지원대상자 <sup>주1)</sup>	형식요건 심사 제외	관계 법률에 따라 가점 (만점의 5% 또는 10%)
우대가점	장애인 <sup>주2)</sup>		만점의 5%

※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만점의 10%까지 인정한다.

주1)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함

주2) 장애인의 경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시·군·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및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를 말함

## 9. 주의사항 안내

○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응시자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(불합격 등)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○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,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.

-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여 재공고(7일 이상) 했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koat.or.kr>)에 재공고 예정입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농진원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입사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- 대상: 채용과정에서 지원(응시)자가 제출한 채용서류(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)
    - \* 단, 온라인(홈페이지, 전자우편 등) 제출서류, 자발적 제출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
  - 반환 청구방법: 지원(응시자)자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
  - 신청기간 및 발송: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
  -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
- 이의신청 안내 (아래 이메일 주소로 접수)
  - 접수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접수
    - \* 서류전형단계 이의신청은 발표일로부터 2일간 접수
  - 처리기간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
  - 접수방법: 채용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

#### 【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】

- 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- 2)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.
  - (전화) 063-919-1235 (이메일) [secj1322@koat.or.kr](mailto:secj1322@koat.or.kr)
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,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신고처(감사부서 : **063-919-1131**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“청탁, 압력,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, 부정행위 신고처(감사부서 : 063-919-1131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에 대한 불이의가 있을 경우, 부정행위 신고처(감사부서 : 063-919-1131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부정행위 신고처(감사부서 : 063-919-1131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정행위 신고처(감사부서 : 063-919-1131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정행위 신고처(감사부서 : 063-919-1131)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